

## 언론의 자유와 팩트체크(fact check)

Freedom of Speech and fact check

---

저자 (Authors)	장영수 Chang, Young-Soo
출처 (Source)	공법학연구 20(1), 2019.2, 211-240(30 pages) <a href="#">Public Law Journal 20(1)</a> , 2019.2, 211-240(30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비교공법학회</a>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26018">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26018</a>
APA Style	장영수 (2019). 언론의 자유와 팩트체크(fact check). 공법학연구, 20(1), 211-240
이용정보 (Accessed)	서울대학교 147.46.43.*** 2019/08/08 16:2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언론의 자유와 ‘팩트체크’(fact check)

장 영 수\*

### 《차 례》

I. 문제상황: 언론자유와 팩트체크, 그 긴장과 조화의 방정식	IV. 해외 언론의 팩트체크
II. 표현의 자유에서 사실(fact)과 의견(opinion)	V. 가짜뉴스와의 전쟁과 언론의 자유
III. 팩트체크의 의미와 한계	VI. 언론의 자유와 자율적 팩트체크
	VII. 결론: 팩트체크를 통한 언론자유 의 보장을 위해서...

### I. 문제상황: 언론자유와 팩트체크, 그 긴장과 조화의 방정식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보의 의미와 비중이 커졌다. 개인이나 기업, 심지어 국가 간에도 유용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가 하면,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왜곡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로 인해 이른바 가짜뉴스,<sup>1)</sup> 찌라시 정보라는 것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책임 있는 언론매체에서는 치열한 취재 경쟁과 신속한 보도에 못지않게 보도하는 내용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매체들에서는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분초를 다투는 취재경쟁 속에서 팩트가 제대로 체크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더욱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채우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수히 많다. 또한 최근 그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SNS 또한 팩트체크의 사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가짜뉴스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하여는 한갑운·윤종민, 가짜뉴스의 규율방법에 대한 법적 고찰, 충북대 과학기술과 법 제8권 제1호(2017.6), 59-90(61이하)쪽 참조.

각지대라 할 수 있다.<sup>2)</sup>

그런데 최근에는 언론매체의 자율적 팩트체크를 넘어서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나서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죽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면 그럴까 싶으면서도,<sup>3)</sup> 과연 이런 일에 정부-여당이 나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sup>4)</sup>

이제 가짜 정보에 속은 경험들이 확산되고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보소비자들도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팩트체크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한편으로는 팩트체크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팩트체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신뢰성을 문제삼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위해 정보의 소통이 억제되고, 언론이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는 무수한 정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다. 정부가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검증한 것만 인터넷에 게시될 수 있고, 언론에서 보도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를 바 없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에서 사실(fact)과 의견(opinion)의 구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의견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는 별도로 팩트체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팩트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선입견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팩트체크 자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팩트체크를 빌미로 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오히려 언론탄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팩트체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팩트체크의 의미와 올바른 기능을 위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사실과 의견의 구별 및 양자의 상호관계를 “II.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의견”에

2) 다만, 언론매체들이 주요 정치인들이 SNS를 통해 주장하는 것은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오히려 그 주장의 허와 실에 대한 분석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30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짜 뉴스(Fake News)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2017. 3.]를 내놓은 바 있으나, 이는 가짜뉴스 건수가 실제 기사의 1% 정도 유포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https://opennet.or.kr/13910> (최종방문 2019.1.10.) 참조.

4) 최근 여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거짓 선동, 즉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바 있었다. 그밖에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 등에 대해 여당이 가짜뉴스로 폄하하였던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은 가짜뉴스의 범람도 문제지만, 정당한 비판을 가짜뉴스로 몰아세우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 고찰한다. 그 바탕 위에서는 “Ⅲ. 팩트체크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면서 “Ⅳ. 해외 언론의 팩트체크”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얻는 시사점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Ⅴ. 가짜뉴스 논란과 언론의 자유”를 통해 가짜뉴스 논란이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Ⅵ. 언론의 자유와 자율적 팩트체크”를 통해 언론자유와 팩트체크 사이의 긴장과 조화의 방정식을 풀어 나가는데 작은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Ⅱ. 표현의 자유의 인정범위: 사실(fact)과 의견(opinion)

### 1. 표현의 개념과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

과거 언론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와 동일시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의사소통의 자유(freedom of communication)로 이해되고 있다. 의사표현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사수령자의 자유(특히 알권리), 의사전달자의 자유(특히 대중매체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언론의 자유를 구성하는 첫 단추일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 중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그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범위는 매우 폭넓게 인정된다. 표현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다.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며, 말과 글이 아니라 몸짓이나 그림, 소리를 이용한 표현도 보호의 대상이다.<sup>6)</sup>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보호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진실에 부합하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같은 강도로 보호할 수 없으며, 선의의 거짓말과 악의적인 비방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의 강도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자체에서 결정되기보다는 다른 법익과의 충돌을 통해 확인된다. 예컨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에, 그 표현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혹은 악의적 비방인지의 여부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sup>7)</sup>

5)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9, 671쪽 이하 참조.

6) 장영수, 앞의 책(주 5), 674쪽.

7) 손태규, 현실적 악의 기준의 현재: 한국과 미국 비교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2호(2018.5), 121-154쪽 참조.

다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항시 사후적인 것이어야 하며, 사전적인 제한, 예컨대 표현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sup>8)</sup> 사전적인 검열이나 허가를 통해 기존의 질서 내지 기득권에 부합하는 내용의 의사표현만을 허용하고 그밖의 의사표현을 억압함으로써 새로운 사상,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언론자유를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후적인 제한의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가 갖는 의미와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그보다 더 큰 법익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비로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된다.<sup>9)</sup>

## 2. 표현의 자유에서 사실(fact)과 의견(opinion)의 구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강도의 차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fact)과 의견(opinion)의 구별이다.<sup>10)</sup>

사실에 대한 진술과 의견의 표명은 -양자 모두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표현의 방식과 내용에 포섭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보호의 강도를 달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에 대한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그로 인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참과 거짓을 확인하기 쉽다.<sup>11)</sup> 또한 사실 자체의 묘사에 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이 양심이나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의견의 표명은 개인의 양심 내지 사상의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명예훼손 등에 관한 실정법규정들에서도 이미 전제되고 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sup>12)</sup>가 구성요건 자체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8)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9)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과 관련한 특별한 기준들(정신적 자유의 우월적 지위, 이중기준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 등)은 바로 이와 같은 고려에서 창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사실과 의견의 구별에 관하여는 신평, 한국에서의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사건의 분석과 함께-, 법조 제55권 제8호(2006.8), 56-84쪽; 이준웅,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이른바 사실과 의견의 분리 문제, 한국언론학보 제54권 제2호(2010.4), 187-209쪽; 장영수, 의견보호의 법리와 의견의 범위, 언론중재 2003년 봄호, 4-15쪽 참조.

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실적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12)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있는가 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권<sup>13)</sup>과 제16조의 반론보도청구권<sup>14)</sup>에서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7항,<sup>15)</sup> 제82조의4 제2항<sup>16)</sup>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이러한 실정법규정에서도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른 제한이 부과되는 반면에 의견의 표명에 대해서는 명백한 모욕, 비방, 조롱 등을 제외하고는 두텁게 보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sup>18)</sup>

하지만 양자의 구별이 그렇게 간단하고 명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에 대한 진술, 아니 사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미 세계관 내지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진술 자체에 일정한 의견의 표명이 내포되어 있다고 (또는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나온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15)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⑦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거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6)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분석에 관하여는 노동일·정완, 가짜뉴스의 합리적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53권 제4호(2018.12), 215-246(221이하)쪽 참조.

18)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보도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다음 그 표현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의견표명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미국과 독일의 판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장영수, 앞의 글(주 10), 11쪽 이하 참조.

역으로 의견표명 안에 일정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 3. 뉴스보도가 언론소비자의 의견에 미치는 영향

사실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형태로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역사는 사실에 대한 기술이지만, 사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역사해석이 나온다. E. 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통해 널리 알려진 것처럼 시대정신의 변화에 따라 역사의 재해석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뉴스보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평양선언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이를 보도하였다. 비록 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동일한 것이지만, 그 의미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9)</sup> 이런 점에서 사실과 의견은 명백히 구별된다.

하지만 뉴스보도를 통해 전달된 사실은 이미 언론매체들의 입장에서 정리되고 편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름의 분석과 평가를 담고 있는, 즉 사실과 의견이 상당 부분 결합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보도를 통해 사실에 접하는 - 사실보도와 언론매체의 의견을 엄밀하게 구분해서 읽을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닌- 대다수 언론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매체를 통해 그 사실에 접했는지에 따라서 매우 다른 인상을 받을 수 있다.<sup>20)</sup>

더욱이 전문적인 내용의 사실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론매체의 분석과 평가가 더욱 큰 비중을 갖게 된다. 앞의 예에서 평양선언의 전문(全文)을 소개한 후에 이를 분석·평가한 기사를 실었을 경우,<sup>21)</sup> 이런 선언문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의 언론소비자들은 선언문 자체를 꼼꼼히 검토해 보고 스스로 평가를 내린 후에 이를 분석·평

19) 예컨대 각 언론사의 사설에서 평양선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게 나왔던 것(<http://www.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91> 최종방문 2019.1.10.)은 언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 예컨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교체는 사실이지만, 이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인지, 보다 적극적 추진인지에 대한 언론매체의 해석(즉 의견)은 상이하며, 어떤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지에 따라서 경제진영 교체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21) 평양선언 및 이와 유사한 선언문의 경우 전문적인 용어를 포함하고 있거나, 전문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부담이 되는 등의 이유로 원문을 전부 게재하는 대신에 이를 간추려서 보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한 기사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보기보다는 분석·평가 기사를 통해 평양선언의 의미를 이해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뉴스보도는 단순한 사실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실에 대한 언론매체의 해석을 통해 언론소비자들의 여론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22)</sup>

### Ⅲ. 팩트체크의 의미와 한계

#### 1. 팩트체크의 역할: 사실에 대한 검증

언론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중요한 만큼 보도되는 '사실'이 진실과 부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대중적 영향력이 큰 언론매체에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매우 심각한 왜곡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는 정보들 중에서는 -의도적 이견 의도적이지 않건- 사실과 다른,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적지 않으며, 그 중에는 상업적 이익<sup>23)</sup>을 위해서, 혹은 정치적 선동<sup>24)</sup>을 위해서 악용되고 있는 것들도 드물지 않다.<sup>25)</sup>

가짜뉴스<sup>26)</sup>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플랫폼 차원에서의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sup>27)</sup>와 언론사와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sup>28)</sup>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22)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언론인들도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하여는 이준웅,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이른바 '사실과 의견의 분리' 문제, 한국언론학보 제54권 제2호(2010.4), 187-209쪽 참조.

23) 경제 분야의 가짜뉴스는 관련 기업의 주가를 변동시키고, 주주들의 이익 또는 손해를 야기하는 등의 미시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거시적 쟁점에 대한 가짜뉴스는 피해를 산출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4) 정치 분야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은 선거운동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이지만, 그밖에도 각종 정책이나 정치적 주장에 대한 가짜뉴스를 통해 정당의 지지율을 높이거나 떨어뜨리는 방법도 다양하게 이용된다.

25) 가짜뉴스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면 대선과정에서 문제되었던 댓글 조작도 가짜뉴스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26) 이른바 가짜뉴스의 폐해에 관하여는 장휘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리뷰 제10권 제1호(2017.6), 37-59(42이하)쪽 참조.

27) 오세욱, 자동화된 사실확인(fact checking) 기술(technology)의 현황과 한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4권 제3호(2017.9), 137-180쪽 참조.

28) 황용석·권오성,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



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팩트체크이다. 언론보도 이전에 사전적으로 보도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는 팩트체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보도된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쟁점에 대한 팩트체크는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9)</sup>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통해 왜곡을 바로잡은 사례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미국의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팩트체크였다. 예컨대 2012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밋 롬니(Mitt Romney)는 “오바마가 GM과 크라이슬러를 파산시켰고, 그 결과 지프(Jeep)는 중국에서 생산하게 됐다”는 TV광고를 만들어 공격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이전에 팩트체크에 의해 ‘거짓’이라는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러한 공격은 역효과를 야기했던 것이다.<sup>30)</sup>

또한 우리나라의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후보자 간의 의혹제기에 대한 팩트체크가 중요하게 부각된 바 있었다. 당시 빅 쓰리로 불리던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자는 각기 상대 후보에 대해 다양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다.<sup>31)</sup> 그에 대해 팩트체크의 필요성이 많이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사들의 팩트체크가 진행된 바도 있었다.<sup>32)</sup> 그러나 팩트체크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한편으로는 팩트체크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가 문제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도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각종 주장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는 반박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팩트체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6권 제1호(2017.4), 53-101쪽 참조.

29) 이런 의미에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언론의 게이트 키핑을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정보들, 특히 선거캠페인 시기의 정치광고나 선거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내용상 진위 여부를 판정해줌으로써 공중의 현명한 판단을 돕고 정치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에 관하여는 김선호·백영민, 19대 대선 기간 후보자 간 의혹제기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 언론정보연구 제55권 제1호(2018.2), 161-194(164이하)쪽 참조.

30) 이에 관하여는 김필규, 저널리즘의 새 기대주 팩트체크, 관훈저널 제144호(2017.9), 91-100 (96)쪽 참조.

31) 예컨대 문재인 후보의 아들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혜 취업 논란, 홍준표 후보의 돼지홍분제 논란, 안철수 후보의 부인에 대한 서울대 특혜 채용 논란 등이 제기된 바 있었다.

32) 이와 관련하여 2018년 3월 29일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에서 제정한 제1회 팩트체크 대상에 SBS의 「19대 대선 가짜뉴스 검증」 보도가 선정되었던 것도 이에 대한 관심도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팩트체크는 언론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 의미와 비중은 당분간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sup>33)</sup>

## 2.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의견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팩트체크와 관련하여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의 하나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이다. 예컨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왜곡된 '사실'인식에 근거한 '의견'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또한 사실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전제로 급진적 내지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경우도 팩트체크의 대상이 될까?

팩트체크의 대상을 엄밀하게 팩트, 즉 사실로 한정한다면 팩트가 아닌 의견에 대해서는 검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팩트체크의 의미는 순수한 팩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의 근거가 되는 팩트에 대한 오류를 확인함으로써 주장 자체의 신뢰성 부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곡된 사실 인식에 근거한 의견도 팩트체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34)</sup>

다만,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팩트체크의 방식이다. 예컨대 사실에 대한 나름의 해석에 근거한 주장에 대해 -그러한 해석이 전혀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같은 사실에 대한 다른 해석을 근거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사실상 팩트체크라기보다는 해석의 차이를 둘러싼 논쟁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JTBC의 팩트체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디가우징을 지시했다라도 자기 범죄라서 증거인멸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더불어민 주당 박주민 의원이 반박했던 것<sup>35)</sup>은 팩트체크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JTBC의 팩트체크에서 '협력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sup>36)</sup>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보잉, 구글, 아마존 등의 글로벌 기업에서 도입하였고, 기업의 자율이 아닌 법에 규정하는 것이라 해도 강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33) 이러한 경향은 국내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손제민, 해외 언론의 팩트체크, 관훈저널 제144호(2017.9), 117-124쪽 참조.

34)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공정 논평의 원칙(fair comment rule)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에 관하여는 윤성욱,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언론과 법 제17권 제1호(2018.4), 51-84(62이하)쪽 참조.

35)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92429> (최종방문 2019.1.5.).

36) <http://news.jtbc.joins.com/html/212/NB11724212.html> (최종방문 2019.1.5.).

가 아니라는 주장은 공산국가에서 채택하는 제도, 혹은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것만이 사회주의적 제도라는 오해와 왜곡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37)</sup>

결국 문제의 핵심은 사실과 의견의 엄격한 구분에 못지않게 사실에 대한 해석의 엄밀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정한 해석은 옳고, 다른 해석은 옳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팩트체크는 그 자체로 편향성을 내포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3. 팩트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객관성 확보의 문제

팩트체크의 핵심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다. 이는 팩트체크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팩트체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요구된다. 팩트체크를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체크 자체에 편향성이 내포되어 있을 경우는 팩트체크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과거 팩트체크가 실패한 사례들 내지 팩트체크의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들을 보면, 팩트체크 담당자의 편향성에 의한 의구심이 문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언론매체의 정치적 편향성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반대 성향의 후보자들에 대한 팩트체크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하는 예가 많으며, 거꾸로 언론매체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경우에는 팩트체크에 대한 신뢰 또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자신의 신념과 불일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으며,<sup>38)</sup>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는 국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 팩트체크의 효과 역시 기존 신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sup>39)</sup>

예컨대 제19대 대선 당시의 팩트체크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팩트체크 뉴스보도를 접한 후의 태도 변화가 달라지는 점이 적지 않았다.<sup>40)</sup> 물론 조사의 방법이나 시기 등에 따

37)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현행헌법 하에서도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사회국가적 제도를(특히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점이기도 하며, 국민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도 사회주의에서 기원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8) Jeffrey W. Jarman, Influence of political affiliation and criticism on the effectiveness of political fact-checking,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33, No.1, 2016, pp.9-16; Johan L.H. van Strien/Yvonne Kammerer/Saskia Brand-Gruwel/Henny P.A. Boshuizen, How attitude strength biases information processing and evaluation on the web,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60, 2016, pp.245-252 참조

39) 이에 관하여는 엄정윤·정세훈,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 62권 제2호(2018.4), 41-80(64)쪽 참조.

라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적어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관한 팩트체크와 상대 후보에 대한 팩트체크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점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sup>41)</sup>

그러나 팩트체크의 품질이 우수한 경우에는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가 상승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가짜뉴스는 신념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편향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지만,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 팩트체크에 의해 합리적으로 반박될 경우에는 팩트체크의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sup>42)</sup>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팩트체크의 대상 선정에서의 편향성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며,<sup>43)</sup> 둘째, 팩트체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선택에서의 편향성 문제도 적절하게 해소되어야 한다.<sup>44)</sup> 셋째,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의도적인 왜곡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sup>45)</sup>

## IV. 해외 언론의 팩트체크

### 1. 미국의 팩트체크 - 대선 당시의 팩트체크

미국에서는 대선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가짜뉴스가 나오며, 대선에서의 온갖 허위사

40) 이에 관하여는 김선호·백영민, 19대 대선 기간 후보자 간 의혹제기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 언론정보연구 제55권 제1호(2018.2), 161-194쪽 참조.

41) 예컨대 미국의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통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결국 그가 당선된 것을 보면서 팩트체크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후보의 거짓말에 대한 팩트체크에 관하여는 또한 손제민, 앞의 글(주 33), 117쪽 이하 참조.

42) 이에 관하여는 염정윤·정세훈, 앞의 글(주 39), 65쪽 참조.

43)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사실 여부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44)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45) 팩트체크는 사안에 따라, 또는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언론매체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무엇이며, 기준의 일관성이 지켜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거짓말의 정도를 피노키오 숫자로 표현하는 워싱턴 포스트의 Fact Checker는 오랜 기간의 팩트체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독자들이 Fact Checker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과거의 유사사례를 들어 판정의 정당성을 납득시키고 있다는 것은 기준의 일관성이 팩트체크의 설득력에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 유포와 후색선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들이 팩트체크라는 장르를 만들어내고 활성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팩트체크는 많은 언론매체에 의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Factcheck.org<sup>46)</sup>와 Politifact.com,<sup>47)</sup> The Fact Checker<sup>48)</sup>에 의한 팩트체크이다. 주목할 점은 이들 기관 내지 코너에서 다루는 팩트체크의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Factcheck.org와 워싱턴 포스트의 The Fact Checker는 평균 하루에 1개 정도를 팩트체크의 대상으로 하며, Politifact.com의 경우는 조금 많아서 하루에 10개 내외이다.

그러나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팩트체크에 대한 수요는 많아졌고, 2016년 대선 기간에는 수많은 언론매체들이 팩트체크에 나섰다. 별도의 팩트체크 코너가 없었던 뉴욕타임즈도 수십 차례의 대선 TV토론을 방송하면서 실시간 팩트체크를 선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팩트체크는 정량화된 등급판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다’. ‘별로 그렇지 않다’. ‘너무 나갔다’ 등의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주로 내렸다.<sup>49)</sup>

이처럼 팩트체크의 홍수를 겪게 되면서 오히려 가짜뉴스와 팩트체크의 전쟁은 더욱 복잡해졌다. 물론 원인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가짜뉴스의 범람에 있다. 교황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는 가짜뉴스나,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팔았다, 힐러리의 IS관련 이메일이 유출되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과도하게 확산됨으로써 정작 진지한 정책에 대한 토론이 어려워질 정도에 이르렀던 것<sup>50)</sup>은 이에 대응하는 주류 언론들의 팩트체크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46) Factcheck.org는 조지 W. 부시의 재선을 앞두고 2004년 대선을 위한 선거경쟁이 한창이던 2003년 설립되었다. 에넌버그 재단의 지원을 받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에넌버그 공공정책센터(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에서 이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1992년 대선 당시 CNN에서 정치인들의 거짓 발언을 파헤치는 고정 코너를 운영함으로써 미국의 팩트체크 포맷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브룩스 잭슨(Brooks Jackson)이 설립의 주역이었다. 운영비를 에넌버그 재단 및 다른 개인 후원자 등의 공익적 기부금으로 충당함으로써 팩트체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47) Politifact.com은 2008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07년 일간지인 탬파베이타임스(Tampa Bay Times)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뒤 ‘거짓’과 ‘진실’을 진실(True), 대부분 진실(Mostly True), 절반의 진실(Half True), 대부분 허위(Mostly False), 허위(False), 새빨간 거짓말(Pants on Fire)의 여섯 단계로 나눠 정량화된 등급을 매기고 있다.

48) The Fact Checker는 미국을 대표하는 일간지의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의 한 코너로 운영되고 있다. 글렌 케슬러(Glenn Kessler)가 2011년부터 “수사적 표현에 가려진 진실(The Truth Behind The Rhetoric)”이라는 이름으로 칼럼을 계속해 왔으며, 미국 주요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를 시도하고 있다.

49) 이에 관하여는 손제민, 앞의 글(주 33), 121쪽.

50) 이에 관하여는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craigsilverman/viral-fake-election-news-outperformed-real-news-on-facebook> (최종방문 2018.12.7.) 참조.

그러나 주류 언론들의 팩트체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편으로는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의 파급효를 억제 한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팩트체크의 홍수로 인하여 팩트체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결국 트럼프의 당선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sup>51)</sup>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폭증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팩트체크의 의미와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2. 프랑스의 대선과 크로스체크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 후보가 당선되었던 것은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과 비견되는 이변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프랑스 대선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가짜뉴스는 기승을 부렸다.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가 마크롱 후보의 선거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기독교 휴일을 이슬람 휴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수많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프랑스 언론매체들의 선택은 협력을 통해 검증의 부담을 줄이고, 검증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다. 즉, 여러 언론사들이 연합해서 팩트체크를 함으로써 대상을 나누어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모든 언론매체들이 크로스체크에 참여한 것도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크로스체크를 통해서만 팩트체크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르몽드 등의 단일 언론사에 의해 팩트체크가 수행된 것도 있었고,<sup>52)</sup> 언론매체가 아닌 공익적 기관이 팩트체크에 참여한 것도 있었다.<sup>53)</sup>

그런데 크로스체크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팩트체크의 선구자인 미국에서 찾아보기

51) 이와 관련하여 유권자들(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이 언론의 팩트체크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견해에 관하여는 홍예진, 진실 혹은 거짓: 대선 토론과 실시간 팩트 체크, 신문과 방송 제551호(2016.11), 98-102쪽 참조.

52) 르몽드(Le Monde)는 '데코되르(Décodeur)'라는 이름으로 리베라시옹(Libération)은 '데장투스(Desintox)'라는 이름으로 각기 팀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독자적인 팩트체크를 수행하였다. 데코되르에 관하여는 <http://slownews.kr/67033> (최종방문 2019.1.10.) 참조. 데장투스에 관하여는 <http://slownews.kr/67341> (최종방문 2019.1.10.) 참조.

53) 베르사이유 대학의 공법학과에서 만든 '쉬르리네르(Surligneurs)'는 나름의 학문적 권위를 배경으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정치인들의 발언이 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로 인해 '팩트(fact) 체크'가 아닌 '리걸(legal) 체크'으로 치칭되기도 한다. 쉬르리네르에 관하여는 <http://slownews.kr/66096> (최종방문 2019.10.) 참조.

힘든 새로운 형태의 팩트체크였기 때문이다.<sup>54)</sup> 자체 팩트체크팀을 운영하고 있는 르몽드를 포함한 37개 기관이 참여하였던 크로스체크는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의 확산이 트럼프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그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55)</sup>

크로스체크에 참여한 언론매체들은 팩트체크의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검증작업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그 결과 팩트체크에 참여하는 언론매체의 숫자는 유동적이다. 또한 검증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언론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나 형태도 참여 언론매체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프랑스의 크로스체크는 이른바 시한부 플랫폼으로 불과 3개월 동안 활용되었다. 협업에 의한 팩트체크가 대선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론매체들이 각자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협력하였던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팩트체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로 돌아왔다.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이견의 조정 등과 관련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으로 보인다.<sup>56)57)</sup>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크로스체크의 방법이다. 프랑스의 크로스체크에서 국민들이 직접 제기한 질문 항목들과 Facebook, Instagram 등에서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을 선정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소멸될 수 있는 정보를 부각시켜 생명력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검증과정에서 해당 콘텐츠가 활성화될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나,<sup>58)</sup> 팩트체

54) 언론매체들 사이의 보도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들이 협업을 통해 일을 나눈다는 것은 과거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55) 진민정, 『팩트체크』로 뭉친 프랑스 언론들, 크로스체크 프로젝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17쪽 이하; <https://crosscheck.firstdraftnews.org/france-en/> (최종방문 2019.1.5.) 참조. 크로스체크의 탄생에 구글의 지원 및 매개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글은 가짜뉴스에도 유력한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언론들의 협업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자극한 것으로 평가된다.

56) 독일에서도 크로스체크와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언론사들의 경쟁이 너무 심해서 프랑스처럼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7) 이와 관련하여 우리 언론들이 협업을 통한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주도로 KBS를 비롯한 10여개 언론사들이 참여하는 ‘SNU팩트체크’ 사이트가 운용되었지만, 프랑스의 크로스체크와 같은 공동 검증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히 검증 기사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수준에 머물렀던 점은 그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관하여는 정홍규, 다시 저널리즘 기본으로, in: 양윤경 외, 『가짜뉴스를 잡아라! 프랑스 팩트체크』, 지식플랫폼, 2018 참조.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 언론들의 협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강동엽, 가짜뉴스를 차단하라! 프랑스 언론과 사회의 노력, in: 양윤경 외, 『가짜뉴스를 잡아라! 프랑스 팩트체크』, 지식플랫폼, 2018; 박세용, 정확한 ‘받아쓰기’에서 정확한 ‘검증’으로, in: 양윤경 외, 『가짜뉴스를 잡아라! 프랑스 팩트체크』, 지식플랫폼, 2018 참조.

58) 이른바 루머의 확산에 주의하는 전력적 침묵 정책이 채택된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진민정, 『팩

크 이후에 슬랙(Slack)을 통해 관련 언론매체들에게 통지되고, 토론하는 방법<sup>59)</sup>은 향후의 협업에 있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독일의 팩트체크와 「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NetzDG)」

독일에서도 가짜뉴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에 실시된 연방의회 선거에서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생산·유포되었고, 그로 인하여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던 양대 정당인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의 득표율이 감소하고, 급진주의 우파 정당인 대안당(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sup>60)</sup>

물론 지난 선거에서의 지지율 변화가 가짜뉴스로 인한 것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민당과 사민당이 뚜렷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던 점이나 독일정부가 받아들인 난민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독일 국민들이 급진주의 정당들의 주장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된 점도 양대 정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손도르프(Schorndorf) 폭동뉴스<sup>61)</sup>와 같은 가짜뉴스의 확산<sup>62)</sup>이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응하여 독일 언론매체들도 다양한 팩트체크 사이트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인 ARD의 faktenfinder, ZDF의 ZDFcheck17, Bayerischen Rundfunk의 faktenfuchs 등이 있지만 그 파급효는 가짜뉴스를 잠재우기에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원인으로는 가짜뉴스가 대중의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반면에 팩트체크는 이성적 분석을 통해 그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 가짜뉴스에 접하는 사람들이 팩트체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된다.<sup>63)</sup>

트체크'로 몽친 프랑스 언론들, 크로스체크 프로젝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29쪽 참조.

59) 슬랙을 이용한 수평적인 협업모델에 관하여는 진민정, 『'팩트체크'로 몽친 프랑스 언론들, 크로스체크 프로젝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48쪽 이하 참조.

60) 2013년 연방의회선거와 비교할 때, 기민당의 지지율은 34.1%에서 32.9%로, 사민당의 지지율은 25.4%에서 20.5%로 내려간 반면에 우파당의 지지율은 4.7%에서 7.9%로 상승하였다. 그밖에 급진주의 좌파 정당인 좌파당(Linke)의 지지율도 8.6%에서 9.2%로 상승하였다.

61) <https://www.vice.com/de/article/3kn4z5/die-wahrheit-uber-den-einwandererermob-von-schorndorf> (최종방문 2019.1.10.) 참조.

62) 손도르프(Schorndorf) 폭동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는 <https://correctiv.org/faktencheck/artikel-faktencheck/2017/07/18/was-ist-wirklich-in-schorndorf-passiert> (최종방문 2019.1.10.) 참조.

63) 또한, 다수의 팩트체크 사이트는 자신의 사이트에 가짜뉴스의 유포사실을 게시할 뿐, 유포가 이루어지는 사이트에 직접적으로 뉴스의 사실여부를 적시하는 적극적인 정정활동을 하지 않는 것



독일에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한 소셜네트워크 게시물에 대한 삭제 의무와 위반시 제재 사항이 포함된 법률인 「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NetzDG)」<sup>64)</sup>이 시행되고 있다.<sup>65)</sup>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된 비교적 간단한 내용의 이 법률은 제1조에서 적용범위를 형법 제86조 등<sup>66)</sup>의 구성요건을 포함한 위법한 내용을 인터넷에 플랫폼을 둔 소셜 미디어 업체로 명시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1년에 100개 이상의 위법한 내용에 대한 항의가 있었던 소셜 미디어 제공자에 대해서 반년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항의 내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제3조에서는 위법한 내용에 대한 항의와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 제공자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sup>67)</sup> 제4조는 위반시의 과태료에 관한 조항이며, 제5조는 다국적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소셜 미디어를 겨냥해서 독일 국내에 수권대리인을 두도록 하여 독일 내에서의 업무 내지 법적 절차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이다. 제6조는 경과규정으로서 제2조에 따른 최초의 보고는 2018년 전반기에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에 따른 절차는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도입되어야 함을 규정하였다.<sup>68)</sup>

독일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언론매체들의 자율적 팩트체크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필요해질 수 있다. 둘째, 독일의 「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과 같은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sup>69)</sup> 셋째, 법적 대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조항만으로 충

도 가짜뉴스의 지속적인 유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4) 공식 명칭은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법집행의 개선을 위한 법률)이다.

65) 이 법률의 입법배경에 관하여는 심영섭, 가짜 뉴스 난무... '가짜 뉴스 방지법' 추진, 신문과 방송 통권 제556호(2017.5), 20-25쪽 참조.

66) 독일형법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반포), 제86의a(위헌조직 표시 사용), 제89조의a(국가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행위의 준비), 제91조(국가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행위의 유도), 제100조a(간첩목적의 위조), 제111조(공연한 범죄선동), 제126조(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 제129조(범죄단체조직)~제129조의b(외국에서의 범죄단체와 테러단체, 확장적 박탈과 몰수), 제130조(국민선동), 제131조(폭력물 반포 등), 제140조(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 제166조(신앙, 종교단체, 세계관단체 등 모욕), 제184조의d(금지된 매춘의 수행)와 연계하여 제184조의b(아동음란물의 반포, 취득 및 소유), 제185조(모욕)~제187조(중상), 제201조의a(사진촬영을 통한 고도로 개인적인 사생활영역의 침해), 제241조(협박) 및 제269조(증거로 중요한 데이터의 위작)가 명시되었다.

67) 또한 명백하게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삭제할 의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에 부과하였고(제3조 제2항 제2호), 그밖의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3조 제2항 제3호),

68) 독일의 「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에 대한 설명으로는 G.Spindler/P.Schmitz, Telemediengesetz: mit Netzwerkdurchsetzungsgesetz, 2018; 이정념, 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의 규율에 관한 법적 쟁점. 법조 제731호(2018.10), 392-429(406이하)쪽 참조.

분치 않으며,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신고절차 등이 중요하다.<sup>70)</sup>

## V. 가짜뉴스와의 전쟁과 언론의 자유

### 1. 정부가 앞장선 가짜뉴스와의 전쟁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앞장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2018년 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를 겨냥해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며,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검정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 수사 및 엄중 처벌하고, 방송통신위 등이 가짜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조치하고, 각 부처는 가짜뉴스 발견 즉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요청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관계 부처가 온라인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sup>71)</sup>

69) 독일의 「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에서 가짜뉴스를 타겟으로 하면서도 법률상으로는 가짜뉴스가 아닌 형법 제86조 등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70) 「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의 시행으로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의 경우 위법적 게시물의 신고를 위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트위터는 트윗 신고(Twitt melden) 항목에 NetzDG에 해당함(Fällt unter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을 클릭해 신고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게시물의 신고를 클릭하고, ‘이 게시물이 부적절함(Dieser Inhalt ist unangemessen)’을 선택하면 그 이유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지 중 ‘혐오 발언(Hate speech)’을 선택하면 된다. 구글이나 유튜브는 별도의 서식(Melden von Inhalten im Rahmen des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신고를 위한 별도의 서식(NetzDG-Meldeformular)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및 게시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센터(Löschzentrum)를 운영하고 있다. 「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 시행 이전에도 운영되던 이 센터는 해당 법령 시행 후 직원을 약 500명에서 약 1000명으로 늘렸다. 이에 관하여는 <https://blog.naver.com/jongheesalon/221353750786> (최종방문 2019.1.10.) 참조.

7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4207.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4207.html) (최종방문 2019.1.10.);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100\\_2017100038/?did=1825m](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100_2017100038/?did=1825m) (최종방문 2019.1.10.) 참조.

이후 가짜뉴스와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대립이 거세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sup>72)</sup> 언론매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첨예하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sup>73)</sup> 다른 한편으로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sup>74)</sup> 더욱이 중요한 국정사안들이 쟁점화되고,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가짜뉴스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은 계속 뜨거워진 바 있다.<sup>75)</sup> 더욱이 여권 내에서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는 등 양상이 더욱 복잡해졌던 것이다.<sup>76)</sup>

문제의 핵심은 가짜뉴스에 대응의 필요성이 아니라 대응의 방법이다. 가짜뉴스의 폐해와 이를 억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이를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법적 규제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기존의 법적 규제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규제가 가능하며,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앞서 검토한 선진외국의 경우를 볼 때,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언론매체의 자율적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방법을 동원한 독일의 경우에도 법을 통한 강제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며, 결국 언론매체의 자율적 통제를 독려하고 보조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72) 정부의 여당의 가짜뉴스 비판에 대한 야당의 반응에 관하여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의 제25차 최고위원회 겸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2018.11.2. 09: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5644>) (최종방문 2019.1.10.) 참조.

73) 가짜뉴스보다 통제하려는 정부가 더 위험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이준웅, 허위조작정부 규제론의 위험성과 정치적 위험성, in: 추혜선 국회의원·오픈넷·미디어오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자료집』(2018.11.5.), 10-21쪽; 손지원, 가짜뉴스보다 더 유해한 가짜뉴스 규제론, in: 추혜선 국회의원·오픈넷·미디어오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자료집』(2018.11.5.), 40-43쪽 참조.

74) 이런 주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http://www.nocutnews.co.kr/news/5041497> (최종방문 2019.1.1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7903&ref=A> (최종방문 2019.1.10.) 참조.

75) <http://www.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604089354412> (최종방문 2019.1.10.) 참조.

7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01701071003018001> (최종방문 2019.1.10.);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71870> (최종방문 2019.1.10.) 참조.

## 2. 가짜뉴스는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가?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정부가 가짜뉴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될 경우의 문제점이다.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언론에 대한 허가 및 검열은 금지된다. 언론보도의 내용이 위법할 경우에 사후적 규제를 가할 수는 있지만, 사전적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정부가 주체가 되어 영화나 방송 또는 비디오물 등에 대하여 등급심사를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sup>77)</sup>

또한 사후적 제한의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만 그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특별한 의미와 비중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짜뉴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 정부가 그 판단 주체가 된다는 것<sup>78)</sup>은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sup>79)</sup> 그로 인하여 여론 내에서도 정부가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위협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sup>80)</sup>

그렇다고 국회에서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고, 결국 가짜뉴스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 판단을 통한 제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문제를 법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신속한 해결이 어렵고, 문제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sup>81)</sup>

가짜뉴스를 확인하는 방법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근거자료와 사진까지도 조작하는

77) 헌재 2006.10.26. 2005헌가14; 헌재 2008.6.26. 2005헌마506; 헌재 2008.7.31. 2007헌가4 등 참조.  
 78) 정부를 구성하는 경찰이나 방통위 등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갖는다. 경찰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들이 나왔던 것(<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10/10/2018101000125.html> 최종방문 2019.1.10.)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79) 이와 관련하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국가가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0917> 최종방문 2019.1.10.),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하지 않은 상태로 그 유통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80) <https://www.sedaily.com/NewsView/1S5UXQN5UA> (최종방문 2019.1.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0/0200000000AKR20181010094200001.HTML?input=1195m> (최종방문 2018.11.10.) 참조.  
 81) 예컨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뉴스가 법원에서 가짜뉴스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미 판결이 내려질 시점에는 선거결과를 되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의 유포 등에 대한 증거의 확보 및 법적 책임의 추궁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실험결과 가짜뉴스 판별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sup>82)</sup> 가짜뉴스 판별법 등이 소개되고 있지만,<sup>83)</sup>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짜뉴스의 판별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정부가 가짜뉴스로 판정하여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더욱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 3. 가짜뉴스와 언론의 자유

가짜뉴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팩트체크 방법에서 확인 되듯이 진실과 거짓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속할 뿐만 아니라, 거짓이라 해도 ‘악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언론자유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가짜뉴스의 규제보다 언론자유 보호가 우선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가짜뉴스란 언론자유에 기생하는 빈대와도 같은 것인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언론자유가 제 기능을 상실한다면 초가삼간 다 태워서 빈대잡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가짜뉴스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sup>84)</sup> 그 의미는 모든 뉴스에 대한, 언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되새기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팩트체크와 같은 언론매체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말하지 않는다. 반면에 정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지정하고, 그 유통을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8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8/0200000000AKR20180928070800076>. HTML?input=1195m (최종방문 2019.1.10.) 참조.

83) 예컨대 1.제목 비판적으로 읽기, 2.인터넷주소(URL) 자세히 살펴보기, 3.자료 출처 확인하기, 4.문법적 오류 확인하기(맞춤법, 어색한 문단), 5.사진 면밀하게 살펴보기, 6.날짜 확인하기, 7.주장의 근거 확인하기, 8.관련 보도 찾아보기, 9.풍자 또는 해학과 구별하기, 10.의도적인 가짜 뉴스 의심하기 등이 소개되고 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369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369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최종방문 2019.1.10.).

84) 임종섭, 언론의 위기와 가짜 뉴스 파동 - 뉴스에 가짜는 없다, 관훈저널 제142호(2017.3), 87-93쪽; 한상희, 가짜뉴스는 없다, in: 추혜선 국회의원·오픈넷·미디어오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자료집』(2018.11.5.), 32-36쪽.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가짜뉴스 판별의 주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이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본의 아니게 생산 또는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정부가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가짜뉴스 판별의 주체가 될 경우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게 된다.<sup>85)</sup>

둘째, 가짜뉴스의 판별은 최대한 신속하게 행해져야 하며, 널리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뉴스로 인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확한 판별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의 크로스체크와 유사한- 협력의 방법을 모색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셋째, 의도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대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일시적으로 주목을 끌다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한 후에 슬며시 사라지는 가짜뉴스에 대해 사후적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망각하게 되면, 유사한 가짜뉴스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통해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sup>86)</sup>

## VI. 언론의 자유와 자율적 팩트체크

### 1. 팩트체크의 대상의 선정

가짜뉴스와의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야 할 것은 언론매체들이며, 언론매체가 중심이

85) 예컨대 정부가 검토한 가짜뉴스 근절 방안에 지상파·JTBC 시사프로 지원 있었다는 언론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0/201810300028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0/2018103000282.html) 최종방문 2019.1.10.)가 주목을 받았던 것이나 이에 대해 정부의 반박(<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332> 최종방문 2019.1.10.)이 있었던 것은 그것이 정부의 언론에 대한 중립성, 공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86)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재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국내 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2018.12), 245-273쪽; 이진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78호(2018.2), 431-455쪽 참조.

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팩트체크의 실효성과 신뢰성 강화는 언론매체의 존재이유와도 연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팩트체크의 실효성 및 신뢰성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대상의 선정이다. 한편으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들에 대한 팩트체크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팩트체크에 적합한 사항인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sup>87)</sup>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 팩트체크의 대상 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팩트체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실에 한정되어야 한다.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의견이 팩트체크의 대상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의견 자체가 아니라 그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팩트체크의 대상이다.

둘째, 팩트체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즉, 팩트체크의 대상이 시의성,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팩트체크 대상들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어야 한다. 논란이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팩트체크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이는 팩트체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제일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셋째, 팩트체크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주목받지 못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오히려 해당 사항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 등에 대한 편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팩트체크를 계속하는 것은 그 공정성을 의심받기 쉽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sup>88)</sup>

다섯째, 같은 사항에 대한 팩트체크의 반복이나, 다른 언론매체에서 팩트체크한 것을 중복하는 것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고, 그로 인하여 팩트체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것이다.

87)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에서 2016년 팩트체크의 다섯 가지 준칙을 불편부당성과 공정성, 정보원 투명성, 재정과 조직에 대한 투명성, 방법의 투명성, 공개적이고 정직한 수정으로 제시하였던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FCN 준칙에 관하여는 박아란·이나연·정은령,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주요 원칙』,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17쪽 이하 참조.

88) 예컨대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팩트체크를 계속하는 것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 팩트체크의 방식

대상 선정 이상으로 팩트체크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팩트체크의 방식이다. 어떤 방식으로 팩트체크를 하는가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체크가 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팩트체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요소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실과 의견의 엄격한 구별을 전제하며, 팩트체크를 통한 사실의 확인 이외에 그로부터 도출되는 의견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팩트체크는 말 그대로 팩트의 체크이어야 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up>89)</sup>

둘째, 팩트체크의 정확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적절하게 활용하되, 편향성을 배제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문가의 판단이 특정한 성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다.<sup>90)</sup>

셋째,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짜뉴스로 판정한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팩트체크의 근거 자체가 팩트체크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sup>91)</sup>

넷째,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팩트체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의 크로스체크와 같은 협업을 통한 검증, 혹은 교차검증을 가능케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팩트체크의 신뢰성은 그 주체인 언론매체의 신뢰도에 비례한다. 결국 언론매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팩트체크의 신뢰성을 높이는 첩경이다. 언론매체의 경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곧 팩트체크의 신뢰성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 3. 팩트체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항들

팩트체크로 밝히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들도 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의혹이 제

89) 팩트체크에 근거하여 가짜뉴스에 근거한 의견을 비판할 수 있으나, 이는 팩트체크 자체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90) 팩트체크에는 이러한 성향이 개입되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평가자의 가치관이 사실인식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91) 예컨대 관련자의 기억에만 의존한 팩트체크는 그 신뢰성에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언의 내용 자체가 또 다른 팩트체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기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팩트체크의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팩트체크가 가능한 전제조건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법적으로 보호되는 국가기밀, 군사비밀, 영업비밀 등에 관한 경우에는 팩트체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때로는 국가기밀 등에 관한 사항이 공익과 관련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있지만,<sup>92)</sup> 이를 팩트체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 내지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사항도 원칙적으로 팩트체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본인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팩트체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팩트체크 담당자와 특별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사항은 팩트체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특정 언론매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 언론매체에서 팩트체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관련성이 없는 다른 언론매체에 의한 팩트체크는 가능할 것이다.

## VII. 결론: 팩트체크를 통한 언론자유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는 인권보장의 측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의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언론의 역할과 파급효가 큰 만큼 가짜뉴스의 위험성 또한 크며, 전세계적으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향후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팩트체크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나아가 정부와 법원의 역할은 또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당분간 인터넷과 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가짜뉴스를 잡기 위한 팩트체크 역시 확대·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최전선의 담당자는 언론매체이며, 전쟁을 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자율적 팩트체크이기 때문이다.

비록 독일의 『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처럼 법적 조치를 동원하는 예가 있어도 그 역

92) 이러한 언론보도가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익적 측면에서 언론자유를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이부하, 미국헌법에서 국가기밀 대(對) 기자의 취재특권,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3호(2013.12), 179-200쪽 참조.

할은 매우 제한적이고, 보충적이다. 팩트체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가짜뉴스의 폐해를 적기에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팩트체크 이상의 방법을 찾기 어려우며, 정부가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전면으로 나섬으로써 언론자유 침해의 우려를 자극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언론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언론매체의 자율적 팩트체크를 간접 지원하는 것 이외의 역할을 정부가 담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언론자유에 기생하는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 언론자유 자체를 훼손하는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서고, 언론매체의 자율적 팩트체크를 강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다.<sup>93)</sup>

언론의 생명은 자율이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에서도 예외는 인정될 수 없다.

## 참고문헌

- 김선호·백영민, 19대 대선 기간 후보자 간 의혹제기에 대한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 : 팩트체크 뉴스 판정결과와 지지후보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제55권 제1호 (2018년 2월), 161-194쪽.
- 김필규, 저널리즘의 새 기대주 팩트체크, 관훈저널 제144호(2017.9), 91-100쪽.
- 노동일·정완, 가짜뉴스의 합리적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53권 제4호(2018.12), 215- 246쪽 참조.
- 박아란·이나연·정은령,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주요 원칙』,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 백영민·김선호, 팩트체크 뉴스 노출, 영향력 인식, 공유 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61권 6호 (2017년 12월), pp.117-146.
- 손지원, 가짜뉴스보다 더 유해한 가짜뉴스 규제론, in: 추혜선 국회의원·오픈넷·미디어오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자료집』(2018.11.5.), 40-43쪽.
- 송현주, 후보자 차별성 보여주며 진일보한 '토론' : 대선과 TV 토론, 신문과 방송. 통권558호 (2017년 6월), pp.11-15.
- 신평, 한국에서의 의견과 사실의 이분론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사건의 분석과 함께-, 법조 제55권 제8호(2006.8), 56-84쪽.
- 심영섭, 가짜 뉴스 난무... '가짜 뉴스 방지법' 추진, 신문과 방송 제556호(2017.5), 20-25쪽.
- 양윤경 외, 『가짜뉴스를 잡아라! 프랑스 팩트체크』, 지식플랫폼, 2018.

93) 같은 취지로 노동일·정완, 앞의 글(주 17), 241쪽 이하 참조.

- 염정윤·정세훈,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62권 제2호 (2018.4), 41-80쪽.
- 오세욱, 자동화된 사실 확인(fact checking) 기술(technology)의 현황과 한계,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4권 3호 (2017. 9), 137-180쪽.
- 윤성욱,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언론과 법 제17권 제1호(2018.4), 51-84쪽.
- 이부하, 미국헌법에서 국가기밀 대(對) 기자의 취재특권,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3호(2013.12), 179-200쪽.
- 이재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국내 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2018.12), 245-273쪽.
- 이정념, 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의 규율에 관한 법적 쟁점, 법조 제731호(2018.10), 392-428쪽.
- 이준웅,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이른바 ‘사실과 의견의 분리’ 문제, 한국언론학보 제54권 제2호 (2010.4), 187-209쪽.
- \_\_\_\_\_, 가짜 뉴스와 사실확인 보도, 관훈저널. 통권 제143호 (2017년 여름), pp.33-40.
- \_\_\_\_\_, 허위조작정부 규제론의 위헌성과 정치적 위험성, in: 추혜선 국회의원·오픈넷·미디어오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자료집』(2018.11.5.), 10-21쪽.
- 이진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78호(2018.2), 431-455쪽.
- 임종섭, 언론의 위기와 가짜 뉴스 파동 - 뉴스에 가짜는 없다, 관훈저널 제142호(2017.3), 87-93쪽.
- 장영수, 의견보호의 범리와 의견의 범위, 언론중재 2003년 봄호, 4-15쪽.
- \_\_\_\_\_, 『헌법학』, 홍문사, 2019.
- 장휘일,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리뷰 제10권 제1호(2017.6), 37-59쪽.
- 진민정, 『팩트체크로 뚫은 프랑스 언론들, 크로스체크 프로젝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 최순욱·윤석민, 협업형 사실검증 서비스의 의의와 과제 : <SNU팩트체크>의 사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4권 2호 (2017. 6), pp.173-205.
- 최지선, 대선보도 팩트체크 어떻게 했나 : 팩트체크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언, 언론중재 제143호 (2017.6), 6-17쪽.
- 한상희, 가짜뉴스는 없다, in: 추혜선 국회의원·오픈넷·미디어오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자료집』(2018.11.5.), 32-36쪽.
- 홍숙영·정의철, 가짜뉴스와 언론 신뢰의 위기 :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탐색 Crisisonomy. Vol.13 no.8 (2017. 8), 43-60쪽.
- 홍예진, 진실 혹은 거짓 : 대선 토론과 실시간 팩트체크, 신문과 방송. 제551호(2016.11), 98-102쪽.
- 황용석·권오성,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6권 제1호(2017.4), 53-101쪽.

Jarman, Jeffrey W.: Influence of political affiliation and criticism on the effectiveness of political fact-checking,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33, No.1, 2016, pp.9-16.

Spindler, Gerald / Schmitz, Peter: Telemediengesetz: mit Netzwerkdurchsetzungsgesetz,

C.H.Beck 2018.

Strien, Johan L.H. van / Kammerer, Yvonne / Brand-Gruwel, Saskia / Boshuizen, Henny P.A.:  
How attitude strength biases information processing and evaluation on the web,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60, 2016, pp.245-252.

## <국문요약>

책임 있는 언론매체에서는 치열한 취재 경쟁과 신속한 보도에 못지않게 보도하는 내용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매체들에서는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분초를 다투는 취재경쟁 속에서 팩트가 제대로 체크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더욱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채우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수히 많다. 또한 최근 그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SNS 또한 팩트체크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언론매체의 자율적 팩트체크를 넘어서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서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죽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면 그럴까 싶으면서도, 과연 이런 일에 정부-여당이 나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향후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팩트체크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나아가 정부와 법원의 역할은 또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당분간 인터넷과 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산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가짜뉴스를 잡기 위한 팩트체크 역시 확대·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최전선의 담당자는 언론매체이며, 전쟁을 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자율적 팩트체크이기 때문이다.

비록 독일의 「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처럼 법적 조치를 동원하는 예가 있어도 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고, 보충적이다. 팩트체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가짜뉴스의 폐해를 적기에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팩트체크 이상의 방법을 찾기 어려우며, 정부가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될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정부가 전면으로 나서므로써 언론자유 침해의 우려를 자극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언론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언론매체의 자율적 팩트체크를 간접 지원하는 것 이외의 역할을 정부가 담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언론자유에 기생하는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 언론자유 자체를 훼손하는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서고, 언론매체의 자율적 팩트체크를 강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언론의 자유, 표현, 가짜뉴스, 팩트체크, 크로스체크, 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

<Abstract>

## Freedom of Speech and 'fact check'

Chang, Young-Soo\*

In the responsible media, it is important to be confident in the content coverage and the credibility of the content to be reported as promptly as possible. Therefore, there is a strong interest in fact checking in media. However, there are a few cases where the facts are not properly checked in the contentious competition, and there is a lot of unverified information among the information that fills the Internet. In addition, the SNS, which has been increasing in recent years, is also a blind spot for fact checks.

Recently, however, it has been sai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lead the war against fake news beyond the autonomous fact checking of the media. That's because the fake news problem is so serious. However, there are also worries that it may seriously infringe the freedom of the speech.

There are various prospects for how future war against fake news will be developed, how fact check will develop, and how the role of government and court will change.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spread of fake news through the Internet and SNS will not stop for the time being, and the fact check for catching up on fake news will also expand and strengthen. The front line of the war against fake news is the media, and the most important weapon of war is the autonomous fact check.

Although there are examples of using legal action, such as the German "Network Enforcement Act", its role is very limited and complementary. If the problem can not be solved through the fact check, it is inevitable to resolve it through the judgment of the court.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 method beyond the fact check in order to promptly block the flaws of fake news in a short time. In the event that sanctions are imposed, there will be serious violations of freedom of speech.

---

\* Professor, Korea University Law School.

It is not desirable to stimulate the concerns of the press freedom infringement by bringing the government to the front in the war against fake news. The war against fake news should not undermin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government should not assume any role other than indirectly supporting the autonomous fact check of the media. In order to avoid foolishness to undermine the freedom of the press in order to catch fake news that is parasitic on freedom of press, it is the right direction for the government to step back and strengthen the autonomous fact check of media.

Key words: freedom of speech, expression, fake news, fact check, cross check, The Network Enforcement Act

┃ 투 고 일 자: 2019년 2월 8일

┃ 심 사 일 자: 2019년 2월 16일

┃ 게재확정일자: 2019년 2월 21일